

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22년 12월 16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개정이유

기존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의 공급 유형을 이익공유형, 지분적립형,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등 공공자가 유형을 최초 도입하여 공급 확대함으로써, 실 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

- 제명 “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”을 “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”으로 함

나. 입주예약자 선정 주택 적용범위 확대(제3조)

- 국민주택 이하의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외에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입주예약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적용 범위 확대하도록 함

다. 사전 입주자모집 공고 내용 중 입주예정월을 입주예정시기로 함(제4조)

라. 입주예약자 선정 제한 기한 변경(제7조)

- 부적격자 또는 입주예약자 선정 취소·포기에 따른 다른 입주예약자 선

정 제한 기간을 6개월로 변경하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상의 위촉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8조제3항제3호의 기간을 준용하도록 함

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고시안

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명을 “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”으로 한다. 제1조~제7조 중 “공공분양주택”을 “공공주택”으로 한다. 제1조 본문 중 제13조제7항을 제13조제8항으로 한다. 제3조제1항 본문중 이 고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은 각 호에서 정하도록 한다. 제4조제1항7호 부분중 입주예정월을 입주예정시기로 한다. 제7조제4항 본문 중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8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적용하여를 6개월간으로 하고, 조문에 단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상의 위촉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8조제3항제3호의 기간을 준용한다를 추가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